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2010.2

머 리 말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기준 중국법원에 수리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29,195건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중국에 특허 신청한 한국인 및 기업수는 1,822개, 총 신청건수는 12,843만 건으로, 국가별 신청건수로는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1일부터는 새로 수정된 《특허법 실시세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세칙에는 중국 내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비밀유지심사 청구를 의무화 하였으며, 직무발명 창조 발명자 및 설계자에 대한 장려금과 보수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KOTRA와 특허청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에 공동 발간한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을 개정된 신규 《특허법》과 《특허법 실시세칙》에 맞게 재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책자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발췌하여, 총 15개 법령 및 규정을 게재하였습니다.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게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중국의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 책자가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덕배 특허청 주중파견관 및 KOTRA 상하이 KBC의 IP-CHINA DESK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2월

KOTRA 중국지역본부장 김종섭

I. 특허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
1.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2
2.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19
3. 특허행정집행법판법	57
II. 상표법 관련 법령 및 규정	69
1.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70
2.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84
3. 주지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98
III.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및 규정	103
1.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104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112
3.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115
IV. 저작권법 관련 법령	118
1.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19
2.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136
V.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143
1.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144
2. 중화인민공화국형법	153
3.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155
4.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판법	162

CHAPTER

I

특허법 관련 법령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1984년 3월 1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92년 9월 4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을 하고, 2000년 8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08년 12월 27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을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3장 특허출원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5장 특허권의 기간·종료 및 무효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발명창조의 장려·발명창조의 응용추진·창조능력의 제고·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②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3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심사하여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②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①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이용하고 그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임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9조 ①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그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①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③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①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특허방법의 사용 및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확산을 결정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15조 ①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② 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①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특허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임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① 누구라도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먼저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④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즉시에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22조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② 신규성이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그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실용성이란 그 발명과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 규정의 현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23조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②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 또는 현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③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 법 규정의 현존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말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치료 및 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품의 도안·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
-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서¹⁾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²⁾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명확·간단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그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그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그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서(请求书)란 출원서를, 설명서(说明书)는 명세서, 권리요구서(权利要求书)란 권리청구범위를 말한다.

2) 설계자이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창작자를 말한다.

②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① 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①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 발명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그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그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특허권의 기간 · 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 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특허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그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화해,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을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배상액·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게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받고 그 행위를 배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쟁에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

제49조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공의 건강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하여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 ① 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2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이 법 제48조제2호 규정의 상황에 한정한다.

제53조 이 법 제48조제2호 또는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48조제1호 또는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실시하는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55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57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

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8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 보호

제59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①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2조 특허권의 침해분쟁 중, 권리침해 혐의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설계가 현존기술 또는 현존설계에 속한다는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63조 특허허위표시행위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내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

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

② 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66조 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차례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67조 ①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9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개인이 판매한 후, 그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제조·사용·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70조 생산경영을 위한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 것을 모르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조 이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4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장 부칙

제7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6호로 공포하며, 2002년 12월 28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을 하였으며, 2010년 1월 9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을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출원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6장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제9장 비용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가 규정한 기타형식으로 처리한다.

제3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거 및 증명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중문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송부일의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우편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서류는 특허대리기구에 송부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는 청구서 중에 명확히 지정한 연락인에게 송부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교부일이 송달일이다.

⑤ 서류의 송부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면 그 문서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마지막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 만료일로 하고, 해당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기한만료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제6조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 외에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한 경우, 권리회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권리상실 전에 처리했어야 하는 상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한 경우 권리회복 청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④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특허법 제24조·제29조·제42조 및 제68조 규정의 기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특허출원이 국방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 특허기구가 수리하여 심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출원이 국방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국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구가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권 수여를 결정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국방이익 외의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즉시 비밀유지 특허출원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비밀유지 심사·거절불복 및 비밀유지 특허권의 무효선고의 특수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① 특허법 제20조 규정의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한다.

②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아래 방식 중의 하나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 심사

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고 그 기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해야 한다.
-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한 경우, 비밀유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후 심사하여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출원인에게 비밀유지 심사를 통지한다.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심사를 통지한 경우 즉시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 규정의 법률을 위반하는 발명창조는 단지 그 실시가 법률이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특허법 제28조 및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

② 이 세칙 규정의 출원일이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을 말한다.

제12조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1. 자기 직무 중에 한 발명창조
2. 본 단위가 부여한 자기 직무 외의 임무수행 중에 한 발명창조
3. 퇴직·원래의 단위를 이직하거나 노동 또는 인사관계 종료 후 1년 내에 한 경우, 원래의 단위에서 담당한 자기 직무 또는 원래의 단위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 있는 발명창조

②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란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위를 포함하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이란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속품·원재료 또는 대외로 공개가 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3조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물질기술조건을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제14조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자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 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登記해야 한다.

③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질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출원

제15조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규정

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권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④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중에 명확히 지정한 첫 번째 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제16조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의 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명칭
2. 출원인이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그 명칭 또는 성명·주소·우편번호·조직기구번호 또는 신분증번호를, 출원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성명 또는 명칭·국적 또는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
3.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위임기구 명칭·기구번호 및 그 기구가 지정한 특허대리인 성명·자격증 번호·연락전화
5.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함)의 출원일·출원번호 및 원 수리기구의 명칭
6.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
7. 출원서류 목록
8. 첨부서류 목록
9. 기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관련 사항

제17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그 명칭은 청구서 중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영역 :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속하는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
 2. 배경기술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검색·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서류를 인용하여 증명
 3. 발명내용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확히 기재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확히 기재
 4. 첨부도면 설명 : 설명서에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5. 구체적인 실시방법 :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데 알고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을 대조
-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인은 전항에 규정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의 모든 부분 앞에는 표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성질이 기타 방식 또는 순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에는 규범적 단어를 사용해야하고 어구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요구에 ... 설명한 ... 바와 같이”와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발명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설명서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그 서열표를 설명서의 단독부분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그 서열표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실용신안특허출원 설명서는 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을 표시한 첨부도면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첨부도면은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에 언급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설명서의 문자부분에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 중 동일한 구성부분을 표시하는 첨부도면 표기는 일치해야 한다.

③ 첨부도면 중 필수적인 단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주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① 권리요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② 권리요구서에 여러 항의 권리요구가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를 매겨야 한다.

③ 권리요구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는 설명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와 일치해야 하고, 화학식 또는 수학적식은 있을 수 있으나 삽화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 …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또는 “도면 … 표시된 바와 같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권리요구 중의 기술특징은 설명서의 첨부도면 중의 상응한 표기를 인용할 수 있고, 그 표기를 상응한 기술특징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하여 권리요구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표기를 권리요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① 권리요구서는 독립권리요구가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요구는 있을 수 있다.

② 독립권리요구는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해야 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③ 종속권리요구는 부가의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권리요구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해야 한다.

제21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요구는 전술부분과 특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전술부분 :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기술방안의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공유의 필요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2. 특징부분 : “그 특징은 ”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기술특징을 구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 및 전술부분에 명확히 기재한 특징과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
-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상 전항의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권리요구는 기타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권리요구만 있어야 하고,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 앞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2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인용부분 : 인용한 권리요구의 번호 및 그 주제 명칭을 명확히 기재
2. 한정부분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 ② 종속권리요구는 단지 앞의 권리요구만 인용해야 한다. 2항 이상의 권리요구를 인용하는 다항의 종속권리요구는 단지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앞의 권리요구를 인용해야 하고, 다른 1항으로 다항의 종속권리요구의 기초로 해석하는 아니 된다.

제23조 ① 설명서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② 설명서 요약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첨부도면이 있는 특허출원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첨부도면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해당 도면을 4cm×6cm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도면중의 자세한 각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약 중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그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출원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해당 생물재료의 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존기구에 보존을 제출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존기구가 발급한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견본은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출원서류 중 해당 생물재료의 특징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생물재료의 견본 보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 중에 그 생물재료의 분류명(라틴어 명칭)·그 생물재료의 견본을 보존하고 있는 기구명칭·주소·보존일시·보존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출원 시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발명특허출원인이 이 세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기타 누구에게도 해당 생물재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
3. 특허권 수여 전에 단지 실험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증

제26조 ① 특허법 규정의 유전자원이란 인체·동물·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부

터 채취한 유전기능의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구비한 재료를 말하며, 특허법 규정의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란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②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인은 청구서에 설명을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형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27조 ① 출원인이 색채보호를 청구할 경우, 색채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매건 디자인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①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용도·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계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 1부를 지정해야 한다.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동일 제품에 대한 다량의 유사한 디자인을 1건 디자인특허로 출원할 경우,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③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제30조 ① 특허법 제24조제1호 규정의 중국정부가 승인한 국제전람회란 국제전람회조약에 규정된 국제전람회에 등록 또는 그가 인가한 국제전람회를 말한다.

② 특허법 제24조제2호 규정에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관련 주

관부서 또는 전국성의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③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 성명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련 국제전람회 또는 학술회의·기술회의를 조직한 단체가 발급한 관련 발명창조는 이미 전시 또는 발표 및 전시 또는 발표일시가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3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원인이 이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성명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선 출원서류 부분은 원 수리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해당 수리기관과 체결한 협의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자교환 등의 경로를 통하여 선 출원서류 부분을 취득한 경우, 출원인이 해당 수리기관이 증명한 선 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우선권의 요구는 출원인이 청구서에 선 출원의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 선 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우선권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서에 선 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및 원 수리기관의 명칭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우선권을 요구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선 출원서류의 부분에 기재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불일치하는 경우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디자인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외우선권을 요구하고 그 선 출원에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이 세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간단한 설명에 선 출원서류의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우선권 향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고 선 출원이 발명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선 출원이 실용신안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후 출원 시 선 출원의 주제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우선권 요구의 기초로 할 수 없다.

1. 이미 국외우선권 또는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2. 이미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3.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할출원에 속하는 경우

③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그 선 출원은 후의 출원일로부터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그 국적증명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의 증명서류
3. 출원인의 소속국가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그 국가에서 특허권·우선권 및 기타 특허관련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증명서류

제34조 특허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하나

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제35조 ①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제품의 다량의 유사한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기타 설계는 간단한 설명 중에 지정한 기본 설계와 유사해야 한다. 1건의 디자인 출원 중 유사한 디자인은 10항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의 동일 류이고 한 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이란 각 제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대 분류에 속하고 습관상 동시에 판매 또는 사용되며, 각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설계구상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③ 2항 이상의 디자인을 1건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디자인 제품의 각 도면 또는 사진의 명칭 앞에 각항 디자인의 순서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공개하는 인쇄준비업무가 완료된 후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는 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은 후에 출판된 특허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7조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특허복심위원회 구성원이 원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요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간단한 설명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에 첨부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요구서가 부족한 경우,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이 청구서·도면 또는 사진·간단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2.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세칙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명확 하거나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 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제41조 ① 2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함,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②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함)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고 발명특허도 출원한 경우, 출원 시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다른 특허도 출원하였음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9조제1항의 동일한 발명창조에 관하여 단지 1항의 특허권만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수여를 공고할 때 출원인이 이미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발명특허도 출원했다는 설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발명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규정기한 내에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를 성명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권의 수여 공고 시 출원인이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했다는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그 발명특허출원을 거절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발명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실용신안 특허권은 발명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종료한다.

제42조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4조 또는 제3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 기한 내에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분할된 출원은 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분할출원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분할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분할출원 제출 시 출원인은 원 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해야 하고,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원 출원의 우선권서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 제2항·제26조제5항·제31조제1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17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제3항·제22조제2항·제4항·제26조제3항·제4항·제31조 제1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0조·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3.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제1항제6호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제27조·제2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제4항·제23조제1항·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4. 출원서류가 이 세칙 제2조·제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히 전항에 열거한 각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제45조 ① 특허출원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과 관련되는 기타 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 출원인이 조기에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그 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출원을 공개해야 한다.

제47조 출원인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소속 류를 기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보정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1조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및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가 지정한 결함에 대하여 보정해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중의 문자와 부호의 명백하고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정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증·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한 보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제53조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2조제2항·제20조제1항·제22조·제26조제3항·제4항·제5항·제31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원의 보정이 특허법 제3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된 출원이 이 세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

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고해야 한다.

②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비밀유지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 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비밀유지 특허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비밀유지 특허권의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제56조 ①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 수여의 결정 공고 후, 특허법 제60조 규정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할 경우,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 항의 청구는 1항의 특허권에 한정한다.

③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이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권 평가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 항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에 대하여 여러 명의 청구인이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단지 1부의 특허권 평가보고만 작성한다. 누구든지 그 특허권 평가보고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단행본 중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해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해야 한다.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9조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60조 ① 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경우,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첨

부해야 한다.

② 복심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③ 복심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복심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① 청구인은 복심청구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②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는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62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3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그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해야 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원 거절결정이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거나,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를 통하여 원 거절결정이 지적한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서가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64조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복심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한 경우, 복심 절차는 종료한다.

제65조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선포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가 근거하고 있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의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조·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3항·제4항·제27조제2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조제2항·제4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6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 또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디자인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 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분을 특허

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무효선고청구인은 지정기한 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전달서류통지서 또는 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에 답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요구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설명서 또는 첨부도면을 정정할 수 없고, 디자인특허권자는 도면·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정정할 수 없다.

제70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사건의 필요에 의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 진행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심리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두심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무효선고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통지서에 대하여 지정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출석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석 심리를 할 수 있다.

제71조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제72조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그 무효선고청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무효선고청구의 심사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특허복심위원회가 이미 진행한 심사업무에 근거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심사절차는 종료하지 아니 한다.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3조 ① 특허법 제48조제1호 규정의 그 특허를 충분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특허권자 및 그 피허가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방식 또는 규모가 국내에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법 제50조 규정의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이란 공공의 건강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약영역 중의 어떤 특허약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특허권을 취득한 그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활성성분 및 그 제품에 필요한 진단용품을 포함한다.

제74조 ① 강제허가 수여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서의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를 거절하거나 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결정 및 그 이유초안을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법 제50조 규정의 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공공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제허가를 수여하는데 관한 규정에 동시에 부합해야 한다. 단 중국이 유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 특허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6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거나 또는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기업·사업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및 보수는 국가의 관련 재무제도 및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7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도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1항 발명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3,000위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항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1,000위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건의를 그의 소속단위가 채택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도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실시에 의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2%, 또는 그 디자인특허의 실시에 의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회성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사용료에서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79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허위의 특허표시행위 조사 및 처리·특허분쟁 조정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제81조 ① 당사자가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또는 특허분쟁의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특허권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둘 이상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한 경우,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82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지이유가 현저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② 특허표시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정명령을 한다.

제84조 ① 아래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 규정의 허위의 특허표시행위에 해당한다.

1.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권이 무효선고가 된 후 또는 종료 후에 계속하여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제1호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제품 설명서 등의 자료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칭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칭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가 특허기술 또는 설계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4.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5. 기타 공중을 혼동하게 하거나,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② 특허권 종료 전에 법에 의하여 특허제품·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고, 특허권 종료 후에 그 제품을 허락판매 및 판매를 한 경우 허위의 특허표시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가 허위의 특허표시 제품이라는 것으로 몰랐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판매정지명령을 하되 과태료 처분은 면제한다.

제85조 ① 특허법 제60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특허출원권과 특허권 귀속분쟁
2. 발명자 또는 설계자 자격분쟁
3.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장려·보수분쟁
4.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권 수여 전,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쟁
5. 기타 특허분쟁

② 전항 제4호 규정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경우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

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조정을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절차의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관련 수리문서 부분을 첨부해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결정한 조정서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지를 청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련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결론나지 아니하고,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에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연장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재정서를 받고 집행통지서일에 피보전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중지시키는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이 세칙 제86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한 관련 절차의 중지란 특허출원의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절차, 특허권 수여 및 특허권 무효선고절차를 잠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의 포기·변경·이전, 특허권 질권 및 특허권 기간 만료 전 절차 등을 잠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1. 특허권의 수여
2. 특허출원권·특허권의 이전
3. 특허권의 질권·보전 및 그 해제
4.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
5. 특허권 무효선고
6. 특허권 종료
7. 특허권 회복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과 주소의 변경

제9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 또는 공고한다.

1. 발명특허출원의 서지사항 및 설명서 요약
2.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 청구 및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한 실질심사의 결정
3. 발명특허출원공개 후의 거절·취하·취하간주·포기간주·회복 및 이전
4. 특허권의 수여 및 특허권의 서지사항
5.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설명서 요약, 디자인특허의 도면 또는 사진 1부
6. 국방특허·비밀유지특허의 비밀 해제
7. 특허권의 무효선고
8. 특허권의 종료·회복
9. 특허권의 이전
10.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
11. 특허권의 질권·보전 및 그 해제
12. 특허실시 강제허가의 수여
13.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의 변경

14. 서류의 공시송달
15.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한 수정
16. 기타 관련 사항

제9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보·발명특허출원 단행본 및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디자인특허 단행본을 무료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제9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기타 국가·지역의 특허기관 또는 지역성 특허조직과 특허문서를 교환할 책임이 있다.

제9장 비용

제93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출원료·출원부가료·공보인쇄료·우선권·요구비용
2.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료·복심료
3.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연차등록료
4. 권리회복청구료·기한연장청구료
5. 서지사항변경료·특허권평가보고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

② 전항에 열거한 각종 비용의 납부표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재정부서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함께 규정한다.

제94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 송부하는 납부용지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할 비용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납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비용 납

부일로 한다. 우체국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우체국의 환 지출 소인 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환이 지출된 날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④ 특허비용을 많이 납부하였거나 중복납부 또는 착오로 특허비용을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비용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 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 또는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료·공개인쇄료 및 필요한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료 납부와 동시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6조 당사자가 실질심사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출원인은 등록절차를 밟을 경우 특허등록료·광고인쇄비 및 특허권 수여의 당해 연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8조 특허권 수여의 당해 연도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전 1년도의 기한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그 연도 연차등록료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종료한다.

제99조 ① 권리회복청구료는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

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기한연장청구료는 상응한 기한 만료일 전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서지사항변경료·특허권평가보고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 판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0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 특허국제출원(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이라 함)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처리단계(이하에서는 '중국 국가단계'라 함)에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기타 각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제103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이 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 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기한추가비용을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4조 ①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3조 규정의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중문으로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다는 서면성명을 제출하고 국제출원번호와 특허권의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2. 이 세칙 제93조제1항 규정의 출원료·공개인쇄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이 세칙 103조 규정의 기한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원시국제출원의 설명서와 권리요구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에는 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술한 내용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국(이하에서는 ‘국제국’이라 함)의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출원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술한 성명 중에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5.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요약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첨부도면 및 요약의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 부분과 요약의 첨부도면 부분을 제출해야 하며, 첨부도면에 문자가 있을 경우 문자를 상술한 중문으로 교환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의 요약과 요약의 첨부도면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6.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출원인 변경수속을 한 경우 변경 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필요 시, 이 세칙 제93조제1항 규정의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 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 날자(이하에서는 ‘진입일’이라 함)를 명확히 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③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했으나 이 조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

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5조 ① 국제출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1.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 또는 국제출원의 중국 지정이 취하된 경우
2.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이 세칙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3.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았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까지 이 세칙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중국에서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이 세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중국에서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이 세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하고 출원인이 보정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요구한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부분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보정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의 하나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시 성명을 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에 설명을 하고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세칙 제30조제3항 규정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건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제3호의 요구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의 진입성명 중 생물재료 건본 보존사항

의 서류 및 그 서류 중에 구체적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설명서에 이미 생물재료의 견본에 대한 보존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 국가단계의 진입성명 중에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생물재료는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견본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제1호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9조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창조가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 중에 설명을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형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 시 해당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선 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 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 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제2항 규정의 청구를 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

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제112조 ① 실용신안특허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명특허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요구서 또는 첨부도면의 문자에 대한 중문 번역문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원문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공고 준비업무를 완료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송부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②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수정할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고 규정된 보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보정할 경우, 지정기한 내에 이 조 제2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① 발명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 번역문을 공개해야 한다.

② 발명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이 국제국에서 중문으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개한 날부터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공개란 이 조 제1항 규정의 공개를 말한다.

제115조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이 세칙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가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단일성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은 규정에 의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어떤 부분이 국제검색 또는 국제초보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 시 출원인이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요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가 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에 검색 또는 초보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 부여를 거절당하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의 어떤 서류의 부분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3조 규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접수한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해야 한다.

제117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시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장 부칙

제118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든지 이미 공개 또는 공개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분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취하간주·거절 및 취하된 특허출원서류는 그 특허출원의 효력 상실일로 부터 만 2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③ 포기·전부무효선고 및 종료된 특허권 서류는 그 특허권의 효력 상실일로 부터 만 3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각종 절차를 밟을 경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② 발명자의 성명·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 및 주소·특허대리기구의 명칭·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지사항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12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출원 또는 특허권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처음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각종 절차를 밟을 경우,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발명창조 명칭 및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③ 1건 우편에는 단지 동일 출원의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제121조 ① 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서·설명서·권리요구서·첨부도면 및 요약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 출원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로 작성되어야 하고, 종이는 단면을 사용해야 한다.

제12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제123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특허행정집행법판법』을 제정하여 지금 공포한다. 동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제3장 특허분쟁의 조정

제4장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

제5장 증거수집·조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유효한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특허분쟁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와 특허권의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유지·규범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여 이 판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처리할 경우,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즉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시비를 분명히 한 다음, 당사자 상호간에 이해하도록 하여 조정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제3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특허분쟁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

허표시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해야 한다.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국가지식산업국이 발급한 특허행정집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공무집행 시, 엄숙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4조 ①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사건에 대하여, 국가지식산업국은 필요 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특허분쟁의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 중,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은 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제5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를 청구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함
4. 접수사건이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접수사건 범위와 관할에 속해야 함
5. 당사자가 그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야 함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이란 특허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 및 특허권의 합법적 승계인을 포함한다. 특허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 중, 독점적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배타적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특허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를 청구할 경우, 청구서 및 관련 특허권의 특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피청구인의 수에 따라 청구서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지식산업국에 관련된 특허권의 법률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산업국이 작성한 검색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①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3. 처리를 청구하는 사항 및 사실과 이유
- ② 관련 증거와 증명자료는 청구서의 붙임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청구서는 청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8조 청구가 이 판법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건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3명 또는 3명이상 홀수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가 이 판법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불수리를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입안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서 및 청구서의 붙임을 우편·직접 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답변서 2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간을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부분을 우편·직접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경우,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두심리를

결정한 경우, 최소한 구두심리 3일전에 당사자들에게 구두심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 거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할 경우, 청구인일 경우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처리하고, 피청구인일 경우 결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두심리를 진행할 경우,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요점을 기록하여 착오가 없는 지를 검사한 후, 사건처리 담당자와 참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특허법 제56조제1항 규정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로서 기재된 기술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기재된 기술특징과 서로 동등한 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동등특징”이란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실현하여, 기본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소속영역의 보통기술자가 창조적 노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제13조 ① 당사자가 조정·화해협약에 도달하거나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는 것 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 및 이유
 3. 침해행위의 성립여부 인정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
 4.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인 경우 피청구인의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는 유형·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침해행위의 불성립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5.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방법 및 기한
- ② 처리결정서에는 사건처리 담당자가 서명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

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한 후, 피청구인이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재차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를 하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처리를 청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바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처리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특허분쟁의 조정

제15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분쟁에 대한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3. 조정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이유

③ 단독으로 특허권 침해배상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작성한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처리결정서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조정청구서를 받은 후, 즉시 청구서 부분을 우편·직접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서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7조 ①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동의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즉시 안건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피청구인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견진술서 중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조정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협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협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비치해야 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종결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귀속 분쟁으로 조정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수리통지서를 가지고 국가 지식산업국에 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이 협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협의서를 가지고 국가지식산업국에 회복절차를 밟아야 하고, 협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작성한 안전취소통지서를 가지고 국가지식산업국에 회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구중지일로부터 만 1년까지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은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4장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

제2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발견 또는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 즉시 안전을 작성하고 2인 또는 2인 이상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는 행위발생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23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의 사실·이유 및 근거와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 확인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25조 ① 조사결과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가 성립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주소
 2.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증거·이유 및 근거
 3. 처벌내용 및 이행방식
 4.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제기의 방법 및 기한
- ② 처벌결정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결과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가 불성립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제5장 증거수집·조사

제27조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계약·장부 등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고 측량·사진촬영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실지 조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 특허권의 침해혐의가 있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조사인에게 현장에서 제조과정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반드시 기록물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기록물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품특허에 관련된 경우 침해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견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특허에 관련된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견본으로 할 수 있다. 추출한 견본수량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추출한 견본의 명칭·특징·수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0조 ①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고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보존을 등기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존등기를 한 증거에 대해서 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은 훼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보존을 등기한 증거의 명칭·특징·수량 및 보존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증거를 수집·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조사·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증거수집·조사를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부서는 즉시에 진지하게 증거수집·조사에 협조하고 가능한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3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을 한 경우,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하고 아래의 침해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침해자가 특허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침해제품을 제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금형의 폐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2. 침해자가 특허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용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특허방법을 실시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금형을 폐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3.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4.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어떠한 실제 판매행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5.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침해자에게 수입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침해제품이 이미 국경을 통과한 경우 그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하고, 침해제품이 아직 국경을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6. 침해행위를 정지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

제34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을 한 후, 피청구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기간에 결정한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② 침해자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결정한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에 대하여 기간만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①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가 형법 제216조 규정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 특허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형법 제280조 규정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아래의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

1. 제조·판매한 제품·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또는 제조·판매에 있는 특허표시가 비특허제품인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그 특허표시와 특허번호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특허표시와 특허번호가 제품과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행위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한다.
2.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에 비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 경우, 행위자에게 그 광고의 선전행위 또는 그 선전자료의 배포행위 정지를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아직 배포하지 아니한 선전자료의 제출을 명한다.
3. 계약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계약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계약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명한다.
4. 타인의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또는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행위자

에게 즉시 상술한 행위의 정지와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의 제출을 명한다.

5.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제37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결정을 할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하여 행위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2.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취한 비용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제39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처벌결정을 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기간에 결정한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행위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정한 은행에 처벌결정서에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일 과태료 금액의 백분의 삼을 과태료에 부가한다.

제4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법에 의한 공무집행업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公安부서는 治安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2조 원(原)중국 전리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규정이 이 판법과 불일치할 경우, 이 판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 이 판법은 국가지식산권국의 해석에 따른다.

제44조 이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CHAPTER

II

상표법 관련 법령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1982년 8월 23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93년 2월 22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을 하고, 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비준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양도 및 사용허가

제5장 등록상표 분쟁의 제정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의 보호를 위하여,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게 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보호하게 하여,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등록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표분쟁 사건을 처리한다.

제3조 ① 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품상표·서비스상표·단체표장·증명상표를 포함하고, 상표등록권자는 상표전용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이 법 규정의 단체표장이란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고, 그 조직 구성원의 상사 활동에 사용되어, 사용자가 그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지를 말한다.

③ 이 법 규정의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권한이 있는 조직에 의하여 통제되지만, 그 조직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원료·제조방법·품질 또는 기타 특정품질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④ 단체표장과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의 특수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4조 ①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제조·가공·선택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표국에 상품상표의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②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표국에 서비스상표의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③ 이 법의 상품상표 관련 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한다.

제5조 2이상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동으로 상표국에 동일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고, 공동으로 그 상표전용권을 행사하고 향유한다.

제6조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하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상표사용자는 그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한다.

제8조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와 색상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지는 상표로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제9조 ① 등록을 출원하는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표등록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① 아래의 표지는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

1. 중국의 국가명칭·국가·국장·군기·훈장과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및 중앙 국가 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역 명칭 또는 표지성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표지
2. 외국의 국가명칭·국가·국장·군기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표지, 단 해당 정부가 동의한 표지는 제외
3.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깃발·표지와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 단 해당 조직이 동의했거나 또는 공중이 용이하게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표지는 제외
4. 통제를 나타내거나 또는 보증을 주는 정부의 표지·검사인과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 단 권리를 허여받은 표지는 제외
5. 적십자·紅新月의 명칭 및 표지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표지
6. 민족의 차별을 포함하는 표지
7. 과대 선전하여 기만성이 있는 표지
8. 사회주의 도덕 풍조를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지

②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이 알고 있는 외국지명은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 단, 지명이 기타 개념을 구비하고 있거나 또는 단체표장 및 증명상표로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미 지명을 사용하여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① 아래의 표지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1. 단지 본 상품의 보통명칭·도형·규격의 표지
2. 단지 상품의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한 표지
3. 현저한 특징이 부족한 표지

② 전항에 열거한 표지가 사용을 통하여 현저한 특징을 취득하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

제12조 입체표지를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단지 상품자체의 성질로 인하여 나타난 형상·기술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구비하도록 한 형상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제13조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주지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그 주지저명상표 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주지저명상표의 인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관련 공중이 그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2. 그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3. 그 상표의 어떤 선전업무가 지속된 시간·정도 및 지리범위
4. 그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5. 그 상표의 저명한 기타 요소

제15조 수권없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자기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여,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6조 ① 상표 중에 상품의 지리적 표지가 있으나, 그 상품은 그 지리적 표지가 표시하는 지역에서 공급되지 않아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단, 이미 선의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계속 유효하다.

② 전항의 “지리적 표지”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공급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상품의 특정품질·신용 또는 기타특징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인수 또는 인문인수에 의하여 결정된 표지를 말한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그 소속 국

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가 인가한 상표대리자격을 구비한 조직에 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19조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유별과 상품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상품분류표에 따라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등록상표를 동일 류의 기타상품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제22조 등록상표의 표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제23조 등록상표의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24조 ① 상표등록출원인은 외국에 자신의 상표를 제1차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상품에 동일 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통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의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하고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① 상표가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전시한 상품에

먼저 사용된 경우, 그 상품의 전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그 상품을 전시한 전람회의 명칭, 전시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일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상표등록을 출원하는데 기재한 사항과 제출한 자료는 진실·정확·완전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비준

제27조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국은 초보심사결정을 거쳐 공고한다.

제28조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했거나, 또는 초보심사결정한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29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를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다. 동일 날짜에 출원한 경우, 먼저 사용한 상표를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하고 기타 사람의 출원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초보심사결정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여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제31조 상표등록의 출원은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선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① 출원을 거절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하여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①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청취하고 확인·조사를 한 후 재정을 한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을 하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복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34조 ①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상표국이 결정한 재정에 대하여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한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재정을 거쳐 이의가 불성립할 경우, 등록을 허여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할 경우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을 거쳐 이의가 불성립하여 등록을 허여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초보심사 공고일로부터 만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5조 상표등록출원과 상표복심신청은 즉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6조 ①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는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에 명백한 착오를 발견할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의하여 직권의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전항 규정의 착오정정은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양도 및 사용허가

제37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을 허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8조 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출원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출원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상표는 소멸한다.

② 매 연장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은 심사 후, 공고한다.

제39조 ①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약에 서명하여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②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 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유한다.

제40조 ① 상표등록권자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③ 상표사용허가계약은 상표국에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상표 분쟁의 재정

제41조 ①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0조·제11조·제12조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고,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를 취소시키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규정에 위반될 경

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를 취소시키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등록인 경우, 주지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전 2항 규정의 사항 외에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그 상표가 등록을 하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 등록허여 전, 이미 이의가 제출되고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43조 ①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를 유지 또는 취소하는 재정을 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4조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1.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등록상표의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4. 연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조잡하게 제조하고 저급의 제품을 고급으로 사칭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황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통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제46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존속기간 만료 후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이 없는 경우, 취소 또는 소멸일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등록을 출원할 것을 명하고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미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통보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등록상표를 사칭한 경우
2. 이 법 제10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조잡하게 제품을 제조하고 저급의 품질을 고급으로 사칭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제49조 ①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고,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 제45조·제47조·제48조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도 아니할 경우,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1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을 허여한 상표와 사용을 지정한 상품에 한정된다.

제52조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

1. 상표등록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경우
4. 상표등록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상표를 교환하고, 교환한 상표의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
5.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제53조 이 법 제52조 규정에 열거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또는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침해자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도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조사·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①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위법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경우,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

2.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4. 침해활동과 관련한 물품을 검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차압하여 봉인하거나 또는 압류
- ②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하여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①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로 하고,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50만원 이하의 배상을 허여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한 판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그 상품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품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

제57조 ①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중이거나 곧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고, 만약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그의 합법적인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①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이후 증거를 취득하기 곤란할 경우, 침해행

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재정을 결정해야 하고, 재정으로 보전조치를 채택했을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한다.

③ 인민법원은 출원인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출원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거절한다.

④ 출원인은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59조 ① 상표등록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상표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③ 위조된 등록상표의 상품인 것을 명백히 알고 한 판매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①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자율적으로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예의바른 봉사를 해야 한다.

②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등록·관리와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는 상표대리업무와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조성하고,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근무자의 법률 및 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의 준수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해야 한다.

제62조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가 직무유기·직권 남용·사익을 추구하여 위법적으로 상표등록·관리 및 복심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제8장 부칙

제63조 상표등록의 출원 및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를 신청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4조 ① 이 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폐기하고, 기타 관련 상표관리규정이 이 법과 저촉될 경우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를 지금 공포하며,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3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양도·연장

제5장 상표평심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상품상표 관련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한다.

제3조 상표법과 이 조례 규정의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 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선전·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 중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조 상표법 제6조 규정의 국가규정으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이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으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상품을 말한다.

제5조 ① 상표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또는 상표평심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고,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응한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주지저명상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한 상표등록출원의 거절 또는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신청 시,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명백한 사실조사의 기초 하에,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인정한다.

제6조 ① 상표법 제16조 규정의 지리적 표지는 상표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상표 또는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② 지리적 표지를 증명상표로서 등록한 경우, 그 상품에 그 지리적 표지의 조건을 사용하는데 부합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증명상표를 통제하는 조직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지리적 표지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경우, 그 상품에 그 지리적 표지의 조건을 사용하는데 부합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지리적 표지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참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자신들의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지리적 표지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참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지리적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단체·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제7조 ① 당사자가 상표대리조직에 위임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대리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위임장에는 대리 내용 및 권한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에는 위임인의 국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의 공증·인증 절차는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상표법 제18조 규정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제8조 ①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는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② 상표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서·증명서류 및 증거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서·증명서류 및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에 근무하는 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에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일 경우
2.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기타 관련이 있어 공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표등록의 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0조 이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문서 또는 서류를 제출한 일자는 직접 제출한 경우 제출 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 우편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편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편 소인일이 없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 우편 소인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①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대리조직에 위임한 경우, 상표대리조직에 송달한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한 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받은 우편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후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 교부 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가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고방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고, 공고일로부터 만 30일후 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상표국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구

체적인 절차는 국무원공상관리부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13조 ①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공포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근거하여 류에 따라 출원해야 한다. 매 1건의 상표등록출원 마다 상표등록출원서 1부와 상표견본 5매를 상표국에 제출해야 하고, 색채를 지정한 경우 색채견본 5매, 흑백견본 1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견본은 명확하고 접착이 용이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작성하거나 또는 사진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고, 길이 또는 폭은 10cm보다 커서는 아니 되고 5cm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체표지를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성명하고 입체형상을 확정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색채조합을 등록상표로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성명하고 문자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⑤ 단체표장 및 증명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출원서에 기재하고 주체자격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제출해야 한다.

⑥ 상표가 외국어이거나 또는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의를 제출한 증서와 일치해야 한다.

제15조 ①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항목은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항목이 상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들어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등록출원 등 관련 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해야 한다.

제16조 공동으로 동일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 출원서 중에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서 중 배열순서의 첫 번째 사람이 대표자이다.

제17조 ① 출원인이 명의·주소·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정된 상품을 삭제·감소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을 양도할 경우 상표국에 양도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① 상표등록의 출원일은 상표국에 출원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절차가 완료되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한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원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② 출원절차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거나 또는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한 내용에 따라 보정하여 상표국에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규정 기한 내에 보정하여 상표국에 제출한 경우 출원일을 보류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2 또는 2이상의 출원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또는 근사한 상표를 동일한 날에 각자 등록을 출원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을 출원하기 전에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날 사용하였거나 또는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스스로 협상을 하고 서면 협의를 상표국에 보고·송부한다. 협의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추첨방식으로 한 사람의 출원인을 확정하도록 통지하고 기타 출원인의 등록출원은 거절한다. 상표국이 이미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20조 ① 상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제1차로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제출한 부분은 그 출원을 수리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을 거치고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하는 기구의 인증을 거쳐야 하고, 그 상품을 전시한 국제전람회가 중국 국경 내에서 거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21조 ① 상표국은 수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규정에 부합하거나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출원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출원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② 상표국이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등록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결정한 경우, 출원인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전에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등록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출원인이 부분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등록출원을 포기한 경우, 상표국은 원 초보심사결정을 철회하고 심사절차를 중단하며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22조 ① 상표국이 초보심사결정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상표이의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피이의 상표가 등재된 상표공고의 호수 및 초보심사결정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명확한 청구와 사실에 의거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상표국은 상표이의서 부분을 즉시 피이의인에게 송달하고, 상표이의서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피이의인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가 이의신청 제출 또는 답변 후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 중에 성명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3조** ① 상표법 제34조제2항 규정의 이의성립은 부분지정상품에의 성립을 포함한다. 부분지정상품에 이의가 성립할 경우, 그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 ② 피이의 상표가 이의재정 효력발생 전에 이미 등록공고가 발간된 경우, 원등록공고를 취소하고 이의재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한 상표는 다시 공고한다.
- ③ 이의재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한 상표는 그 상표의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이의재정 효력발생 전까지, 타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급효가 없다. 단, 그 사용자의 악의에 인하여 상표등록권자에게 조성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④ 이의재정을 거쳐 등록을 허여한 상표에 대하여 평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 상표의 이의재정 공고일로부터 기산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 양도 · 연장

- 제24조** ① 상표등록권자의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후 상표등록권자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하고,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 ② 상표등록권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관련 등기기관이 발급한 변경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충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③ 상표등록권자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권자는 그의 전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해야 하고, 일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제25조** ①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양도신청 절차는 양수인이 처리한다. 상표국은 등록상표양도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한 후, 양수인에게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②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권자는 자신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일괄하여 양도해야 한다. 일괄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 만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오인·혼동 또는 기타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록상표양도신청에 대하여 상표국은 심사하여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26조 ① 등록상표전용권이 양도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될 경우, 그 등록상표전용권을 이전받을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상표국에 와서 등록상표전용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등록상표전용권이 이전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일괄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일괄하여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 만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상표를 이전하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① 상표등록의 연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연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연장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한 후 상응한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② 연장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그 상표의 전 1차 유효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5장 상표평심

제28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32조·제33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평심을 진행한다.

제29조 상표법 제41조제3항 규정의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란 선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등록권자가 타인이 후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가 자신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① 상표평심의 신청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출해야 하고,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기초하여 복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부분을 동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수리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리하고,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통지한다. 보정을 했으나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 후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거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31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평심신청을 수리한 후 즉시 신청서 부분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송하고, 신청서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도록 해야 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에도 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당사자가 평심신청 또는 답변 제출 후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 중에 성명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①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의 필요에 근거하여 평심 신청에 대한 공개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표평심위원회가 평심신청에 대한 공개심리를 결정한 경우, 공개심리 15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공개심리의 일시·장소 및 평심위원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심리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심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출원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심리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석심리를 할 수 있다.

제34조 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정 전에 신청의 취하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취하할 수 있고, 신청을 취하한 경우 평심절차는 종료한다.

제35조 출원인이 상표평심신청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심신청을 할 수 없고,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평심신청에 대하여 이미 재정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누구라도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심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등록상표의 전용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관련 결정 또는 재정은 취소 전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집행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판결·재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결정하여 집행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권 양도 또는 사용허가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이 없다. 다만, 상표등록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조성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37조 ①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품·상품포장·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수 있다.

② 등록표기는 ㉞와 ㉟을 포함한다. 등록표기의 사용은 반드시 상표의 우측 상단이나 또는 우측하단에 표기해야 한다.

제38조 ① 상표등록증을 유실 또는 파손한 경우, 반드시 상표국에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유실한 경우, 상표공고에 유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훼손된 상표등록증은 반드시 추가 발급신청서 제출 시 상표국에 반납해야 한다.

② 상표등록증을 위조 혹은 변조한 경우, 형법의 국가기관증명서를 위조·변조한 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① 상표법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등록권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청한다.

② 상표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누구라도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권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상표의 취소신청 전에 사용한 증거자료 또는 불사용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③ 전항 규정의 사용한 증거자료에는 상표등록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등록권자가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제40조 상표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은 공고하고, 그 등록상표전용권은 상표국의 취소결정일로부터 소멸된다.

제41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의 등록상표 취소에 있어 취소이유가 단지 부분지정상품에 미칠 경우, 그 부분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제42조 ① 상표법 제45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이익액의 2배 이하로 한다.

② 상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43조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자는 상표사용허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서 부본을 상표국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44조 상표법 제40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표지를 몰수한다. 상표표지와 상품이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하여 몰수·폐기한다.

제45조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 시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주지저명상표를 인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그 주지저명상표의 사용하는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그 상표표지를 몰수·폐기한다. 상표표지와 상품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일괄하여 몰수·폐기한다.

제46조 ① 상표등록권자가 자신 등록상표의 말소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등록된 자신 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말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상표등록권자가 자신 등록상표의 말소 또는 부분지정상품에 등록된 자신 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그 등록상표전용권 또는 부분지정상품의 등록상표전용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그 말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한다.

제47조 ① 상표등록권자가 사망 또는 중지하고 사망 또는 중지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등록상표의 이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누구라도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신청 시, 그 상표등록권자의 사망 또는 중지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권자의 사망 또는 중지로 인하여 말소될 경우, 그 등록상표전용권은 상표등록권자의 사망 또는 중지일로부터 소멸한다.

제48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이 조례 제46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원 상표등록증을 폐기하고, 그 상표의 부분지정상품상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상표등록권자가 그 상표의 부분지정상품상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상표국은 원 상표등록증에 주를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또는 다시 심사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49조 등록상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본 상품의 통용명칭·도형·형식, 또는 상품을 직접 표시하는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 또는 포함되어 있는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제50조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표법 제52조제5호 규정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표지를 상품명칭 또는 상품표장으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2.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위하여 창고저장·운송·우송·은닉 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제51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불법경영액의 3배 이하로 하며, 불법경영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53조 상표소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그 기업명칭 등기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사용해온 서비스상표가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이미 등록된 서비스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1993년 7월 1일 이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상표대리의 구체적인 관리판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6조 ① 상표등록용 상품과 서비스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②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는 문서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 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57조 ①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등록상표 및 관련 등록사항을 기재한다.

②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편집·인쇄하여 발행하고, 등록상표 및 기타 관련사항을 게재한다.

제58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비용의 항목과 표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와 규정하여 공포한다.

제59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3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하고, 1988년 1월 3일 국무원이 제1차 수정을 비준하고, 1993년 7월 15일 국무원이 제2차 수정을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세칙’과 1995년 4월 23일 ‘국무원 상표등록 첨부증서문제의 처리에 관한 답변’,은 동시에 폐지한다.

주지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주지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지금 공포하고,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상표법실시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의 주지저명상표란 중국에서 관련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를 말한다.

② 관련 공중에는 상표사용이 명시하는 어떤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요자를 포함하며, 전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과정에 관련된 판매자와 관련사람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아래의 자료는 상표의 저명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

1. 관련 공중이 그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그 상표의 사용·등록의 역사와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의 사용지속기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3. 광고 선전과 판촉활동의 방식·지역범위·선전매체의 종류 및 광고 투입량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의 모든 선전업무의 지속시간·정도·지리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4. 그 상표가 이미 중국 또는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5. 그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이윤 및 납부세액·판매지역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그 상표의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

제4조 ① 당사자가 초보심사결정을 거쳐 공고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이미 등록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재정을 청구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표관리업무 중, 당사자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자신의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청구할 경우, 사건발생지의 시(지·주)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을 금지하는 서면청구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사본을 송부하여 보고한다.

제6조 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업무 중, 주지저명상표의 보호를 요구하는 신청을 받은 후, 사건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당사자가 중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
2. 타인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당사자가 이미 중국에 등록한 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용이하게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그 주지저명상표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가능성에 있는 지 여부

② 상술한 상황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시(지·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사건에 관한 자료전부를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안전수리통지서를 발행해야 하고,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사건에 대한 자료 전부를 상표국에 보고·송부해야 한다. 당사자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발생한 사건이 상술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표국에 보고·송부할 수도 있다.

③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지역 내의 시(지·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송부한 주지저명상표 보호 관련 사건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제6조제1항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 관할지역 내의 시(지·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송부한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상표국에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 제6조제1항의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처음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고, 그 기관이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상표국은 관련 사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을 결정해야 하며, 인정결과를 사건발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본을 당사자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송부한다.

② 상표국은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기타 사건자료를 사건발생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인정결과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동일 상표로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대하여 다시 인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주지저명상표를 인정할 경우,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된 각항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 상표가 반드시 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전제는 아니다.

제11조 상표국·상표평심위원회 및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주지저명상표를 보호할 경우, 그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①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에 의하여 자신의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경우, 그 상표가 중국의 관련 주관기관에 의하여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수리한 사건이 이미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또는 비록 이의가 있더라도 그 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보호기록의 결론에 의하여 사건에 대하여 재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③ 수리한 사건이 이미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그 상표가 저명하지 아니하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그 주지저명상표의 자료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결정을 해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가 타인이 자신의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명칭 등기주관기관에 그 기업명칭의 등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명칭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위조상표 범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15조 주지저명상표를 보호하는 처리결정은 처리기관이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국에 사본을 송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①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응한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상응한 감독 제한조치를 제정하여, 주지저명상표 인정업무 전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② 주지저명상표 인정업무에 참여하는 관련 직원은 직권남용·사리사욕 추구

및 부정한 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주지저명상표 인정 관련 사항을 위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8월 14일 국가공상
행정관리국이 반포한 ‘주지저명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
다.

CHAPTER

III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

(1993년 9월 2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1993년 9월 2일 공포하며,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3장 감독 및 조사

제4장 법률 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보장과 공평경쟁을 장려·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경영자는 시장거래 중, 자원·공평·평등·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법 규정의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이 법 규정에 위반하여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이 법 규정의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이하에서 상품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법인·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①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경쟁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조사하고,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기타 부서가 감독·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①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보호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5조 경영자는 아래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거래에서 경쟁상대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2.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저명상품과 근사한 명칭·포장·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서로 혼동을 조성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그 저명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4. 상품에 인정표지·유명우수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 산지를 위조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에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의 표시행위

제6조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기타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① 정부 및 그 소속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 및 그 소속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지의 상품이 그 지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① 경영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으로 채물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 단위 또는 개인에게 상품가격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 뇌물공여행위로 처벌하고, 상대방 기관 또는 개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 중 일정부분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행위로 처벌한다.

②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할 경우,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중간 소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방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중간 소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할인 또는 소개비를 받은 경영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제9조 ①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제조성분·성능·용도·생산자유효기간·산지 등에 대하여,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의 선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 경영자는 명백히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①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절취·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② 제3자가 전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조 규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경영 정보와 기술정보를 말한다.

제11조 ① 경영자는 경쟁상대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신선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효기간이 곧 도래할 상품 또는 기타 재고상품을 처리하는 행위
3. 계절성 가격할인 행위
4. 채무변제·전입·휴업으로 인하여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12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끼워 팔거나 또는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경영자는 아래의 경품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으로 경품이 있다고 선전하거나 또는 고의로 경품 당첨자를 내정하는 기만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경품판매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질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3. 추첨식의 경품판매에 있어 최고 경품금액이 5,000위엔을 초과하는 행위

제14조 경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경쟁상대의 영업신용과 상품명성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① 입찰자는 입찰을 결탁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와 입찰공고자는 경쟁상대의 공정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감독 및 조사

제16조 현급 이상 감독·조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조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1.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조사경영자·이해관계인·증인을 심문하고, 증거자료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있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

2. 부정경쟁행위와 관련이 있는 협의·장부·영수증·서류·기록·업무서신 및 기타 자료의 조사와 복사
3.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있는 재물을 조사하고, 필요시 피조사경영자에게 그 상품의 출처와 수량을 설명하도록 하고, 판매를 잠시 중지시켜 조사를 대기하게 하거나, 그 재물을 변경·은닉·훼손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조사부서의 근무자는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조사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감독·조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피조사경영자·이해관계인 및 증인은 관련자료 또는 상황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0조 ① 경영자가 이 법 규정에 위반하여 침해받은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침해받은 경영자의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윤으로 하고, 또한 침해받은 경영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② 침해받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① 경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인증표지·유명우수표지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산지를 위조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표시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경영자가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저명상품과 근사한 명칭·포장·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초래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그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감독·조

사부서는 위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사정이 심각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가짜의 저질상품의 판매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경영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의 사용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1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제23조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기타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정할 경우, 성급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5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저질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비용을 함부로 받을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4조 ① 경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선전을 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명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1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광고 경영자가 명백히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배포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제25조 이 법 제10조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사정에 따라 1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6조 경영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1만위엔 이상 1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7조 입찰자가 입찰을 결탁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게 하거나, 입찰자와 입찰공모자가 경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한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한다. 감독·조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1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8조 경영자가 잠시 판매중지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변경·은닉·훼손 금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사정에 따라 판매·변경·은닉·훼손한 재물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9조 당사자가 감독·조사부서가 결정한 처벌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상급주관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 및 그 소속부서가 이 법 제7조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한 경우, 또는 지역간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제한한 경우, 상급기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사정이 심각할 경우 동급 또는 상급기관이 직접 책임 있는 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저질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비용을 함부로 받은 경우, 감독·조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31조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하는 국가기관 종사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제32조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하는 국가기관 종사자가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명백히 알고 있는 경영자를 고의로 비호하고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3조 이 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1995년 11월 2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41호 공포, 1998년 12월 3일 공포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경제계약모범문서관리관법’ 등 33건의 규정 중 ‘행정처벌법’ 규정의 처벌권한을 초과하는 내용의 수정』에 근거하여 개정한다.)

제1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영업비밀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정 경쟁방지법(이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규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경영 정보와 기술정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의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란 해당 정보를 공개된 통로를 통하여 직접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정의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란 해당 정보가 확정적 응용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 권리자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제이익 또는 경쟁상의 우위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이 규정의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것에는 비밀유지 계약 체결, 비밀유지제도 제정 및 기타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가 포함된다.

⑤ 이 규정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란 설계·절차·제품의 배합·제작기술·제작 방법·관리비결·고객명단·원재료의 출처정보·판매전략·원가계산서 또는 입찰서의 최저가격 및 그 내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⑥ 이 규정의 “권리자”란 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향유하는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3조 ① 아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절도·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호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권리자와 업무관계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4. 권리자의 종업원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② 제3자가 전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현금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인정·처리한다.

제5조 ① 권리자(신청인)가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② 피신청인인 단위 또는 개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증명인은 사실대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③ 권리자는 피신청인이 사용한 정보가 자신의 영업비밀과 일치하거나 또는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조건을 증명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사용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증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위법적으로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

락하여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경우, 권리자의 청구와 강제조치 결과 책임에 대한 권리자의 서면보증서 제출에 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피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① 이 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1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경우, 침해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침해자에게 영업비밀이 수록된 도면·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 및 감독
2.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시장에 유입되어 장래에 영업비밀의 공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폐기를 감독. 단, 권리자가 구입·판매 등 기타 처리방법에 동의할 경우 제외한다.

제8조 침해자가 처벌결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계속 실시할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제9조 ①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로 인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요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권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10조 ①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경우,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안건을 처리하는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조사할 때, 권리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8년 12월 3일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1995년 7월 6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1조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저명상품 특유의 상품명칭·포장·표장을 동일 또는 근사하게 제조·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그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전항 규정의 구매자로 하여금 그 저명상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는 구매자가 그 저명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3조 ① 이 규정의 저명상품이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가 있어 관련 공중이 알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특유란 상품의 명칭·포장·표장이 관련 상품에 통용되는 것이 아닌 현저한 식별력을 구비한 것을 말하고,

③ 상품특유의 명칭이란 저명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것이 통용명칭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 단 그 명칭이 이미 상표로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④ 이 규정의 포장이란 상품의 식별 및 휴대·저장·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보조물과 용기를 말한다.

⑤ 이 규정의 표장이란 식별과 미화를 위하여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가된 문자·도안·색채 및 이러한 것들의 배열조합을 말한다.

제4조 ① 상품의 명칭·포장·표장을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근사하게 제조·사용하여 구매자의 오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상품을 저명상품으로 즉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유의 상품명칭·포장·표장은 선사용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해야 한다.

제5조 ① 저명상품과 근사한 명칭·포장·표장의 사용은 주요부분과 전체 인상이 서로 근접한 것에 근거할 수 있고, 일반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력으로 오인이 발생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인정한다.

② 일반 구매자가 이미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킨 경우,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감독·조사할 경우, 저명상품과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에 대하여 함께 인정한다.

제7조 경영자가 이 규정 제2조에 열거한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자가 이 규정 제2조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침해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포장과 표장을 수거·폐기하거나, 또는 침해자에게 폐기를 명하고 감독한다.
2. 침해자에게 현존하는 상품에 있는 침해상품 명칭·포장·표장을 제거하도록 명하고 감독한다.
3. 침해상품의 포장과 표장을 인쇄하는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용된 모형·인판 및 기타 도안 공구를 수거한다.
4. 전술한 세 가지 조치로 침해행위를 제지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침해상품의 명칭·포장·표장과 상품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물품의 폐기를 명하고 감독한다.

제9조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명한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이 규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0조 저명상품 경영자가 이미 특허를 취득한 저명상품 특유의 포장·표장이 모방당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CHAPTER

IV

저작권법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990년 9월 7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4절 권리의 제한

제3장 저작권 허가사용 및 양도계약

제4장 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

제1절 도서·신문잡지의 출판

제2절 공연

제3절 녹음·녹화

제4절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의 방송

제5장 법률책임 및 집행조치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문학·예술과 과학 작품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며,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중국의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한다.

② 외국인·무국적인의 작품은 그 저작자의 소속국가 또는 상시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③ 외국인·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 내에서 처음 출판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④ 중국과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이 없는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작품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 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이 법에서 작품이란 아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의 작품을 포함한다.

1. 문자작품
2. 구술작품
3. 음악·연극·극예·무용·잡기예술작품
4. 미술, 건축작품
5. 촬영작품
6. 영화작품 및 유사한 영화촬영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7.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 도형작품 및 모형작품
8. 컴퓨터프로그램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제4조 ① 법에 따라 출판 또는 전파가 금지된 작품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공중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도 아니 된다.

제5조 이 법은 아래 사항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률·법규,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결정·명령 및 기타 입법·행정·사법 성격을 가진 문서 및 그 정부의 공식번역문
2. 시사뉴스
3. 역법·통용 숫자표·통용서식과 공식

제6조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7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각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 ①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단체관리조직에 위임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 집체 관리조직은 수권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로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과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저작권 단체관리조직은 비영리성 조직이며, 그 설립방식·권리의무·저작권 허가사용료의 수납과 배분 및 그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9조 저작권자는 아래의 자를 포함된다.

1. 저작자
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는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① 저작권은 아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된다.

1. 발표권, 즉 작품을 공중에게 발표하거나 발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분을 표명하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수정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정할 권리

4.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 즉 작품이 왜곡 또는 곡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
5. 복제권, 즉 인쇄·복사·탁본·녹음·녹화·재녹음·재녹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한 부 또는 여러 부로 제작할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할 권리
7. 대여권, 즉 영화 작품과 유사한 영화제작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컴퓨터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임시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이 대여의 주요한 목적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8. 전시권, 즉 미술작품, 촬영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권리
9. 공연권, 즉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작품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권리
10. 방영권, 즉 방영기, 환등기 등의 기술설비를 통하여 미술·촬영·영화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방식으로 작품을 공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방송된 작품을 전파하거나, 확성기 또는 기타 전송부호·소리·이미지의 유사 도구를 통하여 공중에게 방송된 작품을 전송할 권리
12.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을 제공하고, 공중이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13. 촬영제작권, 즉 영화촬영 또는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품을 매개체에 고정할 권리
14. 각색권, 즉 작품을 각색하여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할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문자로부터 다른 언어문자로 전환할 권리
16. 종합편집권, 즉 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분을 선택 또는 편집을 통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종합 편집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 ②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전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를 타인에게 허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이 조 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①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속하지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작품을 창작한 공민은 저작자이다.
- ③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사를 대표하여 창작하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작품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자로 간주한다.
- ④ 상반된 증거가 없으면 작품에 서명한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자이다.

제12조 기존의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하여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은 각색·번역·주해·정리한 사람이 향유하지만, 저작권 행사시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①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공동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다.

- ② 공동작품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을 단독으로 향유할 수 있으나, 저작권 행사시 공동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약간의 작품·작품의 일부·작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종합 편집하여 그 내용의 선택 또는 편집에 있어서 독창성이 표현된

작품은 종합편집작품이라 하고, 그 저작권은 종합편집한 자가 향유하지만, 저작권 행사시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①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하지만, 극작·연출·촬영·작사·작곡 등의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고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중의 극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작품의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① 공민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며,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작품완성 2년 내 단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자는 제3자에게 단위가 사용하는 동등한 방식으로 그 작품의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작품은 저작자가 서명권을 향유하고, 저작권의 가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자에게 장려를 줄 수 있다.

1.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직무작품
2. 저작권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고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했거나 또는 계약으로 약정한 직무작품

제17조 위임을 받아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위임자와 수탁자가 계약으로 약정한다. 계약에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제18조 미술 등 작품의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 저작권의 이전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지만, 미술작품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향유한다.

제19조 ① 저작권은 공민에 속하는 경우, 공민 사망 후 이 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는 이 법 규정의 보호기간 내에, 상속법의 규정에 의

하여 이전된다.

②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변경·종료 후 이 법의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는 이 법 규정의 보호기간 내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작품의 동일성 유지권의 보호기한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국민의 작품 발표권 및 이 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 사망 후 50년이며, 저작자 사망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하고, 공동작품인 경우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한다.

②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저작권(서명권 제외)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는 직무작품의 발표권 및 이 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 보호 기간은 50년이고, 작품이 처음 발표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하지만, 작품이 창작완성 후 50년 내에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은 더 이상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영화작품과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촬영작품의 발표권 및 이 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작품이 처음 발표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되지만, 작품이 창작완성 후 50년 내에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은 더 이상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① 아래의 상황 하에서 작품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저작자의 이름·작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학습·연구 또는 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2. 어떤 작품을 소개·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 중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히 인용하는 경우
 3.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 중에 불가피하게 이미 발표된 작품을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기타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성명한 경우는 제외
 5.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의 매체가 공중 집회에서 발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성명한 경우는 제외
 6.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미 발표된 작품을 번역 또는 소량으로 복사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원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은 제외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관·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이 판본의 진열 또는 보존의 수요를 위하여, 본 관에서 소장된 작품을 복사하는 경우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그 공연의 공중에게 비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작품을 모사·회화·촬영·녹화하는 경우
 11. 중국의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된 중국어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하는 경우
 12. 이미 발표된 작품을 맹인용으로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 ②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된다.

제23조 ① 9년제 의무교육과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가 먼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성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과서 중에 이미 발표된 작품 단편 또는 일부의 문자작품·음악작품 또는 한 폭의 미술작품·촬영작품을 종합하여 편집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저작자의 성명·작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공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된다.

제3장 저작권 허가사용 및 양도계약

제24조 ① 타인 작품의 사용은 저작권자와 허가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법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사용계약은 아래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의 종류
2.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가 독점 사용권 또는 비독점 사용권
3.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범위 및 기간
4. 보수지급의 기준과 방법
5. 위약책임
6. 쌍방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25조 ① 이 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양도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권리양도계약은 아래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 작품의 명칭
2. 양도의 권리종류·지역범위
3. 양도의 가격금액

4. 양도의 가격금액 지급일과 방식
5. 위약책임
6. 쌍방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26조 허가사용계약과 양도계약 중 저작권자가 명확하게 허가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권리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다른 당사자는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작품을 사용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28조 출판자·공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작품을 사용한 경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작품의 동일성 유지권 및 보수를 받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출판 · 공연 · 녹음녹화 · 방송

제1절 도서 · 잡지의 출판

제29조 도서출판자의 도서출판은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0조 도서출판자는 저작권자가 출판을 교부한 작품에 대하여 계약의 약정에 따라 향유하는 독점 출판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타인은 그 작품을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① 저작권자는 계약의 약정기한에 따라 작품을 교부해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 약정한 출판품질·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해야 한다.

②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따라 출판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53조 규정의 민사책임이 있다.

③ 도서출판자가 작품을 재 인쇄 또는 재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도서가 품질된 후, 도서출판자가 재 인쇄 또는 재판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종료시킬 권리가 있다.

제32조 ① 저작권자가 신문사 또는 잡지사에 투고한 경우, 원고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신문사의 게재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또는 원고 발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잡지사의 게재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동일 작품을 기타 신문사 또는 잡지사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② 작품의 게재 후, 저작권자가 전재·발췌 편집을 하지 못한다고 성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신문·잡지는 전재 또는 문장발췌·자료로서 게재할 수 있으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①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작품에 대하여 수정·삭제할 수 있다.

② 신문사·잡지사는 작품에 대하여 문자성 수정·삭제를 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기존의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종합 편집·완성된 작품은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종합 편집한 작품의 저작권자와 원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5조 ① 출판자는 타인이 자신이 출판한 도서·잡지의 판식설계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 규정의 권리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그 판식설계를 사용한 도서·잡지가 처음 출판 후 제10년의 12월 31일 종료된다.

제2절 공연

제36조 ①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공연자(연기자, 공연단위)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연을 주관하는 자가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 그 주관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기존의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하여 만들어진 작품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한 저작권자와 원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7조 ①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1. 공연자의 신분을 명시할 권리
2. 공연 이미지가 왜곡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
3. 타인에게 현장에서 중계하고 그 현장공연을 공개적으로 전송할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4. 타인에게 녹음녹화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5. 타인에게 그 공연이 기록되어 있는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6. 타인에게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그 공연을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② 피허가자는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 규정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8조 ① 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권리 보호 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규정의 권리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그 공연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된다.

제3절 녹음녹화

제39조 ① 녹음녹화제작자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녹음녹화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녹음녹화제작자는 기존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하여 만들어진 작품을 사용할 경우, 작품을 각색·번역·주해·정리한 작품의 저작권자와 원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③ 녹음제작자는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작한 녹음제품의 음악작품을

사용하여 녹음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불허가 사용을 성명한 경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녹음녹화제작자는 녹음녹화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1조 ① 녹음녹화제작자는 그 제작한 녹음녹화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발행·대여·정보네트워크를 통한 공중에의 전파를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그 제품의 처음 제작 완성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된다.

② 피허가자가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경우, 저작권자 및 공연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절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의 방송

제42조 ①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이 타인이 발표하지 아니한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이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3조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이 이미 출판된 녹음제품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구체적 판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4조 ①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아래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그가 방송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행위
2. 그가 방송한 라디오·TV 프로그램을 음악·영상매체에 기록·제작 및 음악·영상매체를 복제하는 행위

② 전항 규정의 권리 보호 기간은 50년이고, 그 라디오·TV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 후 50년의 12월 31일 종료된다.

제45조 TV 방송국이 타인의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녹화제품을 방송하는 경우, 영화제작자 또는 녹화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타인의 녹화제품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및 집행조치

제46조 아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중지·영향제거·사과·손해 배상 등의 민사책임이 있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품을 발표하는 행위
2. 공동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단독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하는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작품에 서명하는 행위
4. 타인의 작품을 왜곡·곡해하는 행위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행위
6.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영화촬영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각색·번역·주해 등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8.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컴퓨터프로그램·녹음·녹화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품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대여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9. 출판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된 도서·잡지의 판식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10.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현장공연을 현장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거나 그 공연을 기록·제작하는 행위

11.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7조 아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중지·영향제거·사과·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침해복제품을 몰수·폐기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침해복제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자료·도구·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제·발행·공연·방영·방송·종합편집하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그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3.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연의 기록이 있는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그 공연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4. 녹음녹화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TV프로그램을 방송 또는 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그 작품·녹음녹화제품 등을 위하여 채택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품·녹음녹화제품 등의 권리 관리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8.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작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48조 ①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해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실제 손해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근거하여 50만위엔 이하의 배상금을 판결한다.

제49조 ①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는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적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장래에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①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는 소를 제기하지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취하는 재정을 한 경우 즉시 집행해야 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④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51조 인민법원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위법소득·침해복제품 및 위법활동에 사용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52조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제작이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영화작품 또는 영화촬영과 유

사한 방식을 창작된 작품·컴퓨터프로그램·녹음녹화제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 발행·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등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한 민사책임이 있다.

제54조 ① 저작권 분쟁은 조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중재협의 또는 저작권 계약 중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② 당사자가 서면 중재협의를 없고, 저작권 계약 중 중재조항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도 아니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6조 이 법 규정의 저작권은 판권이다.

제57조 이 법 제2조 규정의 출판이란 작품의 복제·발행을 말한다.

제58조 컴퓨터프로그램·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보호판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9조 ① 이 법 규정의 저작권자와 출판자·공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의 권리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침해 또는 약정위반 행위는 침해 또는 위약행위 발생 시의 관련 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를 지금 공포하며,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 규정의 작품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기술 영역 내에서 독창성이 있고 어떤 유형의 형식으로 복제 가능한 지적성과이다.

제3조 ① 저작권법 규정의 창작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을 직접 창조하는 지적활동을 말한다.

② 타인의 창작을 위하여 업무를 조직하고, 자문 및 의견·물질조건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창작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에 열거된 작품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문자작품이란 소설·시·산문·논문 등 문자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2. 구술작품이란 즉흥 연설·수업·법정 변론 등 구두 언어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3. 음악작품이란 노래·교향악 등 노래공연 또는 연주가 가능한 가사의 수반여부를 불문한 작품을 말한다.
4. 대본작품이란 연극·가극·지방극 등 무대공연에 쓰이는 작품을 말한다.
5. 곡예작품이란 만담·쾌서(快书)³⁾, 대고(大鼓)⁴⁾, 평서(评书)⁵⁾ 등의 설창(说唱)⁶⁾을 주요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3) 동판(銅板)과 대나무 쪽으로 반주를 하며, 압운된 가사도 간혹 넣어가며 노래를 부르는 비교적 박자가 빠른 중국 민간 설창 문예의 한 종류[DAUM 중국어 사전(<http://cndic.daum.net/>) 인용]

4) 운문(韻文)으로 노래하는 중국 전통 예술의 한 종류[DAUM 중국어 사전(<http://cndic.daum.net/>) 인용]

5) 장편의 이야기를 철부채, 순수건, 딱딱이 등의 도구를 써가며 강론하며 설명하는 민간 문예의 일종[DAUM 중국어 사전(<http://cndic.daum.net/>) 인용]

6) 말도 하고 노래도 하는 민간 문예 형식[DAUM 중국어 사전(<http://cndic.daum.net/>) 인용]

6. 무용작품이란 연속 동작·자세·표정 등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7. 잡기예술작품이란 잡기·마술·곡예 등 형체동작과 기교를 통하여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8. 미술작품이란 회화·서예·조각 등 선·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예술 작품을 말한다.
9. 건축작품이란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형식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의미가 있는 작품을 말한다.
10. 촬영작품이란 기계를 사용하여 감광재료 또는 기타 매개체에 객관적 사물 형상을 기록한 예술작품을 말한다.
11. 영화작품과 영화촬영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이란 영화촬영이 일정한 매개체에 음울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일련의 화면으로 구성되고 적당한 장치로 방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파하는 작품을 말한다.
12. 도형작품이란 시공·생산을 위하여 작성된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 및 지리 현상을 반영하고 사물의 원리 또는 지도·지시도의 구조를 설명한 작품을 말한다.
13. 모형작품이란 전시·시험 또는 관측 등 용도를 위하여 물체의 형상 및 구조에 근거하여 일정 비례에 따라 제작된 입체작품을 말한다.

제5조 저작권법 및 이 조례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시사뉴스란 신문·잡지·라디오 방송·TV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단순한 사실적인 소식을 말한다.
2. 녹음제품이란 표현되는 소리와 기타 음성에 대하여 녹음으로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3. 녹화제품이란 영화작품과 영화촬영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외에 어떠한 음울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연속된 관련 형상·이미지의 녹화로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
4. 녹음제작자란 녹음제품을 처음 제작한 사람을 말한다.

5. 녹화제작자란 녹화제품을 처음 제작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연자란 연기자·연출단위 또는 기타 문학·예술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저작권은 작품 창작을 완성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7조 저작권법 제2조제3항 규정된 처음 중국 내에서 출판한 외국인·무국적자의 작품은 그 저작권이 처음 출판된 날부터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무국적자의 작품이 중국 외에서 처음 출판된 후 30일 내에 중국 내에서 출판된 경우, 그 작품은 동시에 중국 내에서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공동작품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각 공동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협상의 일치를 통하여 행사한다. 협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일방도 양도를 제외한 타방의 기타 권리 행사를 제지할 수 없으나, 얻은 수익은 모든 공동소유 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제10조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하는 작품으로 촬영·제작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 작품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러한 수정이 원작품을 왜곡하거나 곡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① 저작권법 제16조제1항 직무작품에 관한 규정 중, "업무·임무"란 공민이 그 법인 또는 그 조직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책을 말한다.

② 저작권법 제16조제2항 직무작품에 관한 규정 중, "물질기술조건"이란 그 법인 또는 그 조직에서 공민이 창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제공된 자금·설비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 ① 직무작품의 완성 2년 내에, 단위의 동의를 거쳐 저작자는 제3자에게 단위가 사용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작품사용을 허가하고 얻은 보수는 저작자와 단위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작품완성 2년의 기한은 저작자가 작품을 단위에 교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3조 저작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작품은 작품원본의 소유자가 서명권을 제외한 저작권을 행사한다. 저작자의 신분이 확정된 후, 저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14조 공동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한 후, 공동작품에 향유하는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에 대한 승계인이 없고 유증을 받은 자도 없는 경우, 기타 공동 저작자가 향유한다.

제15조 ① 저작자 사망 후, 그 저작권 중의 서명권·수정권 및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의 승계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보호한다.

② 저작권을 승계받을 자가 없고 유증을 받은 자도 없는 경우, 그 서명권·수정권 및 작품의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보호한다.

제16조 국가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작품의 사용은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7조 저작자가 생전에 발표하지 아니한 작품으로 저작자가 발표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 사망 후 50년 내에 그 발표권은 승계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행사한다. 승계인이 없고 유증을 받은 자도 없는 경우, 작품원본의 소유자가 행사한다.

제18조 저작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작품의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보호기간은, 작품이 처음 발표된 후 제50년의 12월 31일 종료된다. 저작자의 신분이 확정된 후에는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성명과 작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 또는 작품 사용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명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저작권법 규정의 이미 발표한 작품이란 저작권자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허가하여 공중에게 공개된 작품을 말한다.

제21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 발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불합리하게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를 주어서도 아니 된다.

제22조 저작권법 제23조·제32조제2항·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사용하는 보수표준은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정·공포한다.

제23조 타인의 작품사용은 저작권자와 허가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가 독점사용권인 경우 서면형식을 채택해야 하지만, 신문사·잡지사가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 규정의 독점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으로 약정하고 계약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허가자는 저작권자를 포함한 어떠한 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허가자는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행사를 허가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저작권자와 독점 허가사용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법 및 이 조례 규정의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이란 출판자가 자신이 출판한 도서와 잡지의 판식설계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 공연자가 자신의 공연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 녹음녹화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녹화작품에 대하여 향유한 권리, 라디오 방송국 및 TV 방송국이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대해 향유한 권리를 말한다.

제27조 출판자·공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사용 작품과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도서출판 계약 중 도서출판자가 독점 출판권을 향유한다고 약정했으나 그 구체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도서출판자는 계약 유효기한 내, 계약에 약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 문자의 원판 및 수정판으로 도서를 출판할 독점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저작권자가 도서출판자에게 발송한 2부의 주문서가 6개월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31조 규정의 도서품질로 간주한다.

제30조 저작권자 저작권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작품을 전재·발행 편집할 수 없다고 성명한 경우, 신문·잡지에 그 작품을 게재할 때 부대 성명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녹음제품으로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고 성명한 경우, 그 작품이 합법적 녹음제품으로 제작할 때 성명해야 한다.

제32조 저작권법 제23조·제32조제2항·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작품을 사용하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중국 내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②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표현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중국 내에서 제작·발행한 녹음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②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그가 제작·발행한 녹음제품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외국의 라디오 방송국·TV 방송국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그가 방송한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저작권법 제47조에 열거한 침해행위가 사회의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불법경영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1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① 저작권법 제47조에 열거한 침해행위가 사회의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 지방인민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조사·처리한다.

②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1년 5월 30일 국가판권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실시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CHAPTER

V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를 1999년 3월 15일 통과하였으므로 지금 공포하며,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18장 기술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기술개발계약

제3절 기술양도계약

제4절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제2장 계약의 체결

제42조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정 중에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계약체결을 핑계로 악의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2.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43조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를 막론하고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8장 기술계약

제1절 일반규정

제322조 기술계약이란 당사자가 기술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한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립한 계약을 말한다.

제323조 기술계약의 체결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유리해야하고, 과학기술성으로 바뀌어 널리 응용 및 보급되어야 한다.

제324조 ① 기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항목명칭
2. 목적물의 내용·범위 및 요구
3. 이행계획·진도·기한·장소·지역 및 방식
4. 기술정보 및 자료의 비밀유지
5. 위험책임의 부담
6. 기술성과의 귀속과 수익의 분할방법
7. 검수 표준과 방법
8. 대가·보수 또는 사용료 및 기타 지급방식
9.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계산방법
10.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1. 명사 및 술어의 해석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배경자료·실시가능성 논증 및 기술평가보고·항목임무서 및 계획서·기술표준·기술규범·원시설계 및 기술문서, 및 기타 기술서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의 구성부분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술계약이 특허와 관련된 경우, 발명창조⁷⁾의 명칭·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출원일·출원번호·특허번호 및 특허권의 유효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7) 특허(专利)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청하며, 발명창조(发明创造)란 발명(发明), 실용신안(实用新型) 및 디자인(外观设计)을 말한다(중국 특허법 제2조 참조).

제325조 ① 기술계약의 대가·보수 또는 사용료의 지급방식은 당사자가 약정하되, 일회성 총 계산·일회성 총 지급 또는 일회성 총 계산·분기 지급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총 금액 중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총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초기비용을 부가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 총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품의 가격·특허 실시 및 기술비밀을 사용한 후 새로이 증가한 자산가치·이윤 또는 제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약정한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총 금액 중 지급하는 일정 비율은 고정비율·매년 증가비율 또는 매년 감소비율을 채택할 수 있다.

③ 총 금액 중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중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약정을 해야 한다.

제326조 ①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직무기술성과에 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직무기술성과의 사용 및 양도하여 취득한 이익 중 일정 비율을 그 직무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장려금 또는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하는 기술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기술성과의 완성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도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직무기술성과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 및 임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기술성과를 말한다.

제327조 비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양도권은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 속하고,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그 비직무기술성과에 대한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8조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관련 기술성과 문서에 자신이 기술성과의 완성자임을 기재할 권리와 영예증서 및 장려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29조 위법한 독점기술·기술진보를 방해 또는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제2절 기술개발계약

제330조 ① 기술개발계약이란 당사자간에 신기술·신제품·신공예 또는 신재료 및 그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② 기술개발계약은 위임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을 포함한다.

③ 기술개발계약은 서면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④ 당사자간 산업 상 응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의 실시화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고한다.

제331조 위임개발계약의 위임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급하고, 기술자료·원시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력사항을 완성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수령해야 한다.

제332조 위임개발계약의 연구개발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기한에 따라 연구개발을 완성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위임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33조 위임자가 약정에 위반하여 연구개발업무가 지체·연기 또는 실패했을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제334조 연구개발자가 약정에 위반하여 연구개발업무가 지체·연기 또는 실패했을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제335조 합작개발계약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업무에 분담하여 참여하고 연구개발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36조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 위반하여 연구개발업무가 지체·연기 또는 실패했을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제337조 기술개발계약의 목적물로 한 기술이 이미 타인의 공개로 인하여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이 의미가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8조 ① 기술개발계약 이행과정 중, 극복할 수 없는 기술문제의 출현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이 실패 또는 부분 실패에 직면할 경우, 그 위험책임은 당사자

가 약정한다. 약정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⁸⁾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전항 규정의 연구개발 실패 또는 부분실패 가능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른 일방에게 통지하고 손해를 감소하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시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39조 ① 개발을 위임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위임자는 무료로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자가 특허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위임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340조 ① 개발을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개발을 합작한 당사자의 공유에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가 공유하는 특허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기타 각 상대방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개발을 합작한 당사자 일방이 그가 공유하는 특허출원권의 포기를 성명한 경우,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각 상대방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특허출원권을 포기한 일방은 무료로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개발을 합작한 당사자 일방이 특허출원을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각 상대방은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

제341조 개발을 위임 또는 개발을 합작하여 완성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및 이익의 분배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모두가 사용 및 양도할 권리가 있으나, 개발을 위임한 연구개발자가 위임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기 전에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계약법 제61조는 “계약의 효력발생 후, 당사자가 품질·가격 또는 보수·이행지역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충하여 협의할 수 있고, 보충 협의에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의하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절 기술양도계약

제342조 ①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의 양도·특허출원권의 양도·기술비밀의 양도 및 특허실시허가계약을 포함한다.

② 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43조 기술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허를 실시하거나 또는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범위를 약정할 수 있으나, 기술경쟁 및 기술발전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344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특허권이 무효선고를 받은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대하여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345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인은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특허실시를 허가하고, 특허실시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교부 및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346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되, 약정외의 제3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해서는 아니 되고, 약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347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보증해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48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49조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은 제공한 기술의 합법적 소유자라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제공하는 기술이 완전하고 착오가 없으며 유효하여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350조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인은 약정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 중 미공개된 기술부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51조 양도인이 약정에 의한 기술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의 부분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거나 또는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게 한 경우, 계약위반행위를 정지해야 하고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약정된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제352조 양수인이 약정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보충하여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료를 보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해야하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양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게 한 경우, 계약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제353조 양수인의 약정에 의한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양도인이 책임지지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4조 당사자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하여 기술양도계약 중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여 후속 개량된 기술성과에 대한 이익분배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방의 후속 개량 기술성과에 대하여 기타 상대방은 사용할 권리가 없다.

제355조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기술의 수출입 계약 또는 특허·특허출원계약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절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제356조 ① 기술자문계약은 특정기술항목에 관한 실행가능성 논증·기술예측·특정 주제의 기술조사 및 분석평가 보고 등의 계약을 포함한다.

② 기술서비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기술지식으로 다른 일방의 특정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건설공정계약과 하도급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7조 기술자문계약의 위임자는 약정에 따라 자문할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기술배경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업무성과를 수령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제358조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는 약정한 기한에 따라 자문보고서 또는 문제해답을 완성해야 하며, 제출된 자문보고는 약정한 요구를 달성해야 한다.

제359조 ① 기술자문계약의 위임자가 약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수를 회수할 수 없고, 미지급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가 기한에 따라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한 자문보고서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를 감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③ 기술자문계약의 위임자가 수탁자의 약정 요구에 부합한 자문보고서와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여 손실이 초래된 경우, 위임자가 책임을 지지만 당사자간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제외한다.

제360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위임자는 약정에 따라 업무조건을 제공하고 협력사항을 완성해야 하며, 업무성과를 수령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61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는 약정에 따라 서비스 항목을 완성해야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기술문제를 해결할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

제362조 ① 기술서비스계약의 위임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수를 회수할 수 없고, 미지급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

②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는 계약약정에 의한 서비스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계약위반책임을 진다.

제363조 기술자문계약 또는 기술서비스계약의 이행과정 중, 수탁자가 위임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와 업무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자에 속한다. 위임자가 수탁자의 업무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임자에 속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364조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기술중개계약기술훈련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7절 지식재산권 침해죄

제213조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종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⁹⁾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특히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214조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판매금액의 액수가 아주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215조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구역 또는 관제¹⁰⁾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216조 타인의 특허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의 저작권 침해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위법소득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심각한 사정이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 액수가 아주 크거나 또는 기타 특별히 심각한 사정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문자작품·음악·영화·TV·녹화작품·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작품을 복제하여 발행한 경우

9) 중국 형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형벌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신체 구금형을 말함

10) 중국 형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된 형벌로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말함

2. 타인이 향유하는 독점출판권의 도서를 출판한 경우,
3. 녹음녹화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를 복제하여 발행한 경우
4. 타인이 서명한 미술작품을 도용하여 제작·판매한 경우

제218조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 제217조 규정의 권리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 판매하여 위법소득 액수가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제219조 ① 아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절취·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② 전항에 열거한 행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논한다.
- ③ 이 조 규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를 말한다.
- ④ 이 조 규정의 영업비밀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말한다.

제220조 단위가 이 절 제213조 내지 219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게 벌금을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직원과 기타 책임이 있는 직원도 이 절 각 조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지재권세관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보호조례』는 2003년 11월 26일 국무원 제30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지금 공포하며,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권의 등기

제3장 권리침해혐의 화물의 압류신청 및 그 처리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의 교류 촉진 및 공공이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 규정의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란 세관이 수출입 화물과 관련이 있고, 중화인공화국의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특허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함)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3조 ①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② 세관은 관련 법률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에 규정된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청구할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수취자 또는 그 대리인·수출화물의 발송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사실대로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세관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권의 등기

제7조 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해관총서¹¹⁾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지 또는 국적 등
2.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 및 그와 관련된 정보
3. 지식재산권의 허가를 행사한 상황
4.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산지·수출입 지역의 세관·수출입상·주요특징·가격 등
5.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제조상·수출입상·수출입지역의 세관·주요특징·가격 등

② 전항 규정의 신청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제8조 ① 해관총서는 신청서류 전부를 받은 날로부터 30 근무일내에 등기의 허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등기를 허여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등기를 허여하지 아니 한다.

1. 신청서류가 전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무효인 경우
2. 신청인이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아닌 경우
3. 지식재산권이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제9조 세관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등기신청이 사실대로 관련 상황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해관총서는 그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함.

제10조 ①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의 등기는 해관총서가 등기를 허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지식재산권이 유효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의 등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관총서에 연장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회의 연장등기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기 유효기간이 만료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식재산권이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의 등기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을 등기한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근무일내에 해관총서에 등기변경 또는 말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권리침해혐의 화물의 압류신청 및 그 처리

제1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곧 수출입될 것을 발견한 경우, 화물 수출입 지역의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권리침해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아래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지 또는 국적 등
2.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 및 그와 관련된 정보
3.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취자와 발송자의 명칭
4.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명칭·규격 등
5.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출입 가능성이 있는 해안·시간·운송공구 등

③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등기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세관의 등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한 경우, 세관에 화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 수취자·화물 발송자가 초래한 손해의 신청 및 세관이 압류 후에 지급하는 창고·보관 및 처리 등의 비용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직접 창고상에게 창고·보관비용을 지급한 경우, 담보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법은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제15조 ①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의 압류신청이 이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고, 이 조례 제14조 규정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세관의 압류증서를 화물 수취자와 화물 발송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의 압류신청이 이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등기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통지송달일로부터 3 근무일 내에 이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 이 조례 제14조 규정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세관의 압류증서를 화물 수취자 또는 화물 발송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세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화물 수취자 또는 화물 발송자는 관련 화물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 화물 수취자 또는 화물 발송자가 자신의 화물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의 침해협약이 있는 화물의 수취자 또는 발송자는 자신의 수출입

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에 화물가치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제공한 후, 세관에 그 화물의 통과를 청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합리적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20조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등기한 지식재산권의 침해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한 경우,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 근무일 내에 압류한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인정해야 한다.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①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에 협조를 청구한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주관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 주관부서가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권리침해사건을 처리하면서 세관에 협조를 청구한 경우, 세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화물 수취자 또는 화물 발송자는 협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신청을 제출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압류한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침해행위 정지명령 또는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이 인민법원의 관련 침해행위 정지명령 또는 재산보전조치의 협조집행 통지를 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1. 세관이 이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20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세관이 이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침해협의를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50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를 받지 못하고, 조사결과 압류한 권리침해협의를 있는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권 침해협의를 있는 화물의 수취자 또는 발송자가 세관에 화물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한 후, 세관에 그 화물의 통과를 청구한 경우
4. 세관이 화물 수취자 또는 화물 발송자가 자신의 화물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5조 ① 세관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침해협의를 있는 화물을 압류할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창고·보관 및 처리 등의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그가 세관에 제공한 담보금 중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담보인에게 관련 담보책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권리침해협의를 있는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그가 지급한 창고·보관 및 처리 등의 관련 비용을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중에 범죄협의를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 법에 의하여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① 압류한 권리침해협의를 있는 화물이 세관의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세관은 몰수한다.

② 세관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몰수한 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몰수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이 사회공익사업에 사용이 가능한 경우 세관은 관련 공익기구가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전달해야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구매를 원할 경우 세관은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몰수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이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구매할 의사도 없는 경우 세관은 침해의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고, 침해의 특징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폐기해야 한다.

제28조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이 개인적 사용 및 합리적 수량을 초과하고, 이 조례 제2조 규정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세관은 몰수한다.

제29조 ① 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등기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후,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확실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권리침해화물을 발견할 수 없거나, 즉시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또는 보호조치가 미약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한 후,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수행 시, 직무소홀·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해관총서에 등기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33조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7월 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관법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상무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판관국·국가지식재산국의 심의를 이미 통과하였으므로 지금 공포하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처리

제3장 전시회 기간동안 특허보호

제4장 전시회 기간동안 상표보호

제5장 전시회 기간동안 저작권 보호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전시회 기간동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업의 질서유지·보호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과 관련 행정법규 등에 따라 이 관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관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제기술 무역전람회·전시판매회·박람회·교역회·전시회 등의 활동 중, 특허·상표·저작권과 관련되는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전시회 관리부서는 전시회 기간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조·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시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호·유지해야 한다.

제4조 ①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유지해야 한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전시회 참가 업체 모집 시,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의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전시회 참가품

목(전시품·전시판 및 관련 홍보자료 등)의 지식재산권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전시회 기간동안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와 전시회 기간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

제5조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는 합법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 또는 사법부서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장 신고처리

제6조 ① 전시회 시간이 3일 이상(3일 포함)이고 전시회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전시회 기간동안 지식재산권 신고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신고기구를 설립한 경우, 전시회 개최지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고 법에 의하여 권리침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신고기구를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전시회 개최지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련 사건의 처리를 강화해야 하며,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전시회 개최지의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의 연락처·연락방법 등을 전시회장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신고기구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전시회 관리부서·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직책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혐의가 있는 전시품이 전시회 기간동안 전시되는 것을 정지
2. 관련 신고자료를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

3. 신고사항 처리의 협조 및 독촉
4.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보에 대한 통계 및 분석
5. 기타 관련 사항

제8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직접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신고기구에 신고하거나 직접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권리자가 신고기구에 신고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합법적이고 유효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증명 :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 특허증서·특허공고 자료·특허권자의 신분증명·특허의 법률상태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상표와 관련되는 경우 신고자가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상표등록 증명서류와 상표권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되는 경우 저작권의 권리증명과 저작권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혐의가 있는 권리침해 당사자의 기본정보
3. 혐의가 있는 권리침해의 이유 및 증거
4. 위임대리인 신고한 경우, 수권 위임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이 관법 제8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신고기구는 즉시 신고자 또는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충을 통지해야 한다.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고자는 허위의 신고자료 또는 기타 신고의 부실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진다.

제11조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신고기구는 이 관법 제8조 규정의 신고 자료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제12조 지방 지식재산권관리부서가 신고 또는 처리의 청구를 수리한 경우,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에 통지하고 즉시 피신고자 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또는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전시기간에 근거하여 피신고자 또는 피청구인의 답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① 피신고자 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진일보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즉시 결정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청구인이 기한을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전시회 종료 후, 관련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즉시 관련 처리결과를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에 적시에 통고해야 한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통계분석업무를 진행하여 관련 상황을 즉시 전시회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전시회 기간동안 특허보호

제16조 전시회 신고기구는 지방 지식산권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 지식산권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지방 지식산권국의 전시회 기간동안의 업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시회 신고기구에서 이관한 특허권 침해혐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특허법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
2. 전시품목에 특허권 침해혐의가 있는 특허권 분쟁처리의 청구를 수리하고, 특허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
3. 전시품목에 타인의 특허 위조혐의와 특허 사칭혐의의 제보를 수리하거나,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시품목 중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특허법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제17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지식산권국은 특허권 침해의 신고 또는 처리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 또는 청구인이 이미 인민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2. 특허권의 무효심판 청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특허권의 권리귀속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의 심리절차 또는 특허관리부서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특허권이 이미 종료하여 특허권자가 권리회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제18조 ① 지방 지식산권국이 피신고자 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즉시에 실행할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조사·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심문 및 촬영·녹화 등의 방식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수집증거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사건처리 담당자 및 증거수집을 조사받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증거수집을 조사받은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기록물에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현장에 기타 사람이 있는 경우 기타 사람이 서명·날인할 수 있다.

제4장 전시회 기간동안 상표보호

제19조 전시회 신고기구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전시회 기간동안의 업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시회 신고기구에서 이관한 상표권 침해혐의에 관한 신고를 수리하고 상표법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
2. 상표법 제52조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전용권 침해 신고를 수리
3. 직권에 의하여 상표법 위반사건을 조사·처리

제20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처리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 또는 청구인이 이미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상표권이 이미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21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수리를 결정한 후, 상표법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전시회 기간동안 저작권 보호

제22조 전시회 신고기구가 지방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지방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전시회 기간동안의 업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시회 신고기구에서 이관한 저작권 침해혐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저작권 법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
2. 저작권법 제47조 규정에 부합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수리하고, 저작권 법규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

제23조 지방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신고 또는 청구를 수리한 후, 아래의 증거 수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문서·장부 및 기타 서면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2.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복제품에 대한 증거표본의 수집
3.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복제품에 대한 등록보관

제6장 법률책임

제24조 지식재산권 침해혐의 신고에 대하여,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전시회 관리부서와 함께 법에 의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25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혐의의 처리청구에 대하여 지방 지식재산권국이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허락 판매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및 특허법 제57조 침해자의 침해행위 즉시 정지명령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전시회의 침해 전시물 철거를 명하고 침해전시물을 소개한 홍보자료의 폐기 및 침해전시품을 소개한 전시판을 교체해야 한다.

② 디자인 특허권 침해혐의의 처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시회에서 그 전시품을 판매하고 지방 지식산권국이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법 제11조제2항 판매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및 제57조 침해자의 침해 행위 즉시 정지명령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전시회의 침해전시물 철거를 명해야 한다.

제26조 전시회 기간동안 타인의 특허를 모조하거나 비 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비 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하는 경우, 지방 지식산권국은 특허법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27조 상표사건 관련 처리청구에 대하여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침해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상표법·상표법실시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28조 저작권 침해 및 관련 권리의 처리청구에 대하여 지방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침해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저작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침해전시품 및 침해전시품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몰수, 소각해야 하며 전시품목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교체해야 한다.

제29조 조사 후, 피신고 또는 피청구한 전시품목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서 침해성립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고 법률효력이 발생한 경우,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직접 제26조 내지 제29조의 처리결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권리침해 전시행위의 제지를 청구하는 것 외에 동일한 피청구인의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제지를 청구한 경우,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그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권리침해혐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지식재산권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 전시회에 참가한 자의 권리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전시회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전시회에 참가한 관련 자에 대하여 공고할 수 있고, 전시회에 참가한 자가 연속 2회 이상 권리침해가 성립한 경우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는 다음 전시회에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

제32조 주최하는 자가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지 아니한 경우, 전시회 관리부서는 주최하는 자에 경고를 하고, 상황을 보아 법에 의하여 그가 신청한 관련 전시회의 재차 개최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장 부칙

제33조 전시회 종료 시 사건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관련 사실 및 증거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전시회 주최자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가 15 근무일 내에 관할권이 있는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이 관법 규정의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란 특허·상표 및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를 말하며, 이 관법 규정의 전시회 관리부서란 전시회의 심사 또는 등기 부서를 말한다.

제35조 이 관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역사 약력

- 정덕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행정학 학사)
충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졸업(법학 박사)
현, 특허청 주중파견관(KOTRA 상하이 KBC)
- 최 정 중국 연변대학 졸업(컴퓨터공학 학사)
포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졸업(공학 석사)
KOTRA 북경사무소 IP-CHINA DESK 연구원
현, 冠和权(北京) 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중국 변리사)

중국 지재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

발행인 : 조환익
발 행 : KOTRA
발행일 : 2010년 2월 1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co.kr
